

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1. 05.

제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11. 08.

다. 상 정 일 자 : 2010. 11. 10.(제1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동명칭변경 및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제천시 청사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센터명칭 변경
 - 고암 모산동 주민센터 → 의암동 주민센터
 - 중앙 의림 명동 주민센터 → 인성동주민센터
 - 남천 동현동 주민센터 → 남현동 주민센터
 - 서부 영천동 주민센터 → 영서동 주민센터
 - 신백 두학동 주민센터 → 신백동주민센터

- #### ○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- 본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변경 및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동주민센터¹⁾ 명칭변경과 제천시청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주소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 -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은 제천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
 - 제천시청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위치에 관한 주소표기 변경은 개정된 도

1)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(2007.8.29)에 따라 '07.9.1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「사무소」 명칭을 「주민센터」로 변경하였음. 주민센터는 청사건물 명칭으로서 장소적·공간적 개념으로 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동사무소와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함

로명 주소법체계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.

- 이와관련,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다.
-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별도의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)

“없음”

5. 소수의견

-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이라던지 관련 서류에 대하여 조속한 정비 요망 (조덕희 의원)
-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. (조덕희 의원)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